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99

발의연월일: 2020. 6. 19.

발 의 자:노웅래·장철민·윤재갑

소병훈・우원식・이개호

이상직 · 김회재 · 김윤덕

설 훈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4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9.3%로 전체실업률 4.2%에 비해 높고, 청년 확장실업률은 26.6%로 관련 지표를 작성한 2015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임.

또한 15세부터 29세에 해당하는 청년 취업자는 2020년 5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24만 5,000명이 줄어 2009년 1월 기준 26만 2,000명이 감소한 이후로 가장 크게 감소한 바 있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의무고용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비율을 현행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상향조정하고 해당 조항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의 방법으로 조세감면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7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법률 제 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100분의 3 이상"을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그 소요 비용"을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실적을 고려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을 하거나 그 소요 비용"으로 한다.

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법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① 「공공기관의 고용 의무) ①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 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 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100 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 의 5 이상-----를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 조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 자 고용 지원) ① -----자 고용 지원) ① 정부는 인건 비 등 경비 과중으로 인한 중 소기업체의 경영 애로를 타개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실적

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법 법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 개정규 저 정은 <u>2021년 12월 31일</u>까지 효 력을 가진다.

을 고려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을 하거나
그 소요 비용
② ~ ④ (현행과 같음)
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법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세2조(유효기간)
2023년 12월 31일